

○委員長 金洙福 宋仁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宋仁回委員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년월일 : 1996.8.28

발의자 : 송인회의원

찬성자 : 김홍규의원

황인명의원

(주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②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③ 1995년도 서울특별시장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심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33인으로 한다.

3. 특별위원회는 95년도 서울특별시장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결산승인 예비심사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사와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1995년도 서울특별시장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委員長 金洙福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委員會 회의안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과 심도 깊은 견토로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8월 30일부터 개원되는 제87회 임시회는 2일간의 시정질문과 9일간의 常任委員會의 활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일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운영委員會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37分 散會)

○出席委員

金 淑 福	金 洪 奎	金 聖 浩
金 鍾 來	朴 德 基	梁 敏 淑
吳 廣 烈	禹 元 植	鄭 泰 宗
鄭 韓 植	黃 仁 明	宋 仁 回
趙 句 衡	洪 樂 元	金 永 姬
洪 淳 喆		

○專門委員

張 奉 萬